

© 연합학습기반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사업단 공고 제2026-001호

**2026년도**  
**연합학습기반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사업**  
**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**

2026년도 「연합학습기반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사업」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4일

연합학습기반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사업단

## I. 통합공고 개요

※ 상세 지원 내용은 공고된 제안요구서(RFP)를 확인하시고 선정 예정 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RFP 번호	세부 사업명	공고단위 (RFP명)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 대상	과제구성 요건* (아래 참고)	선정예정 과제수 (이내)
1	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	연합학습 플랫폼 활용 활성화 지원	3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50백만원)	3년 이내 * 1차년도 6개월	산·학· 연·병	주관연구 개발과제 단독 또는 공동/위탁 연구개발 과제 추가 구성 가능	5
<b>총 합계</b>							<b>5</b>

## II. 신청요건

### □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 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상세 지원 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별로 확인 필요

※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 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우선 적용

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(**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**)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### 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사업별 제안요구서(RFP)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

※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함

·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## □ 신청 및 수행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)에 따라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〈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〉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	참여연구자	

※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는 해당 과제는 참여 제한 대상 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-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 요건 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 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
-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총인건비 계상률을 초과한 연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- 연구책임자(참여연구자 포함)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100%(정부출연(연)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%)를 초과할 수 없음
- 연구책임자는 각 과제제안요구서(RFP)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
  -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복 신청과제가 주관과제인 경우에도 상위과제(총괄주관과제)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
- ※ 공동연구원, 위탁과제는 중복 신청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
-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주관·공동·위

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

-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

※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(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)

- 최종 과제제안요구서(RFP)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‘RFP 기획 보안서약서’ 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·공동 연구책임자로 신청 제한

### Ⅲ. 신청 방법

#### □ 공고 및 접수처

※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2026년도 신규 지원 대상 과제는 IRIS\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 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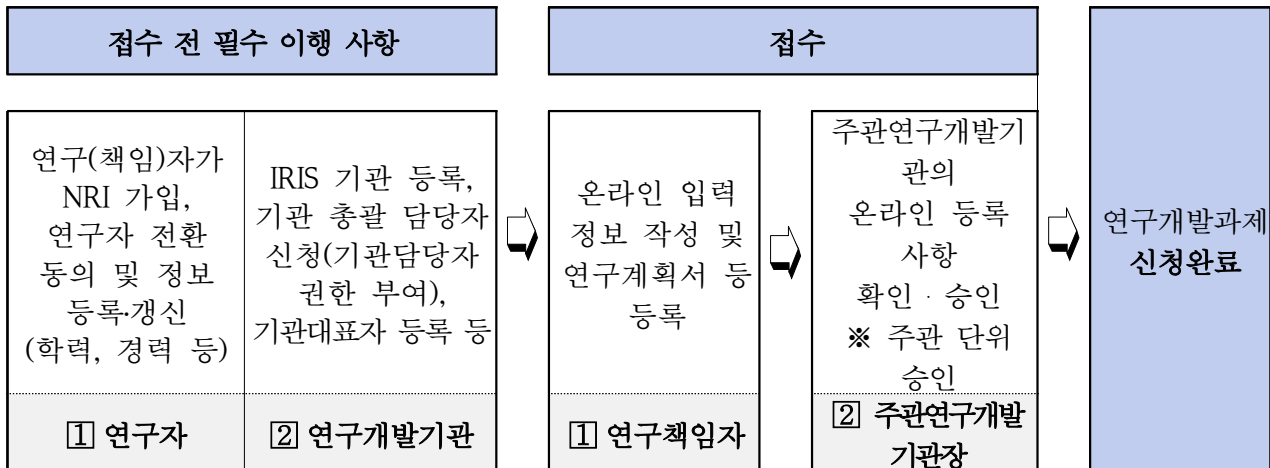
\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 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○ (공고)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 사업공고

○ (접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에 접속하여 신청

#### □ 신청 절차
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 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(KISTEP IRIS 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 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 연구자 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 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\*\* 최근 5년간 수행 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 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 등록, 기관 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 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 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## □ 서류 제출 기한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 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, 신청 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

※ 신청 마감시간(17:00) 엄수 (마감 기한 연장 불가)

※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마감 시간 임박시(마감 2일 전부터)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 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신청 요망

공고 단위 (RFP 명)	연구책임자 과제 신청(전산입력) 마감일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마감일
1. 연합학습 플랫폼 활용 활성화 지원	2026.5.14. 17:00	2026.5.14. 17:00

-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 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기한 내 기관 미승인 시에 접수 대상에서 제외됨

## 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

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

## V. 기 타

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- 신청 과제에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2025.3.6. 일부개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-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[별표 6]에 따라 계상하며, 총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

□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 기준

※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  
 ※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납입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○ 기관유형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
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정부 지원 연구개발비	기관 부담 연구개발비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
$\text{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} = \frac{\text{기관 부담 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)\text{정부 지원 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 부담 연구개발비}} \times 100$			

## 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시 유의 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,
 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’ 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  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‘연구개발과제평가단’ 에서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’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에서 심의

## □ 연구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-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‘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 기관’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, 자원 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

## 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 사항
  -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 -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
  - 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기업 등의 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,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&D 성과 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

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	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	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	납부 상한
대기업/공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20%	R&D성과매출액×기술기여도×2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
중견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10%	R&D성과매출액×기술기여도×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
중소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5%	R&D성과매출액×기술기여도×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

## VI. 문의처

### ○ 사업공고 열람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

### ○ 담당자 안내

- 사업 내용(RFP), 공고 및 평가 관련

구분	공고단위(RFP)	사업 내용(RFP), 공고 및 평가 관련 사항 안내	
		담당자	연락처/이메일
1	연합학습 플랫폼 활용 활성화 지원	홍성은 팀장	02-6301-2183 hse@kpbma.or.kr
		전석환 연구원	02-6191-1512 shj@kpbma.or.kr

- 제출 서류, 규정 및 연구개발비 계상 관련

구분	공고단위(RFP)	제출 서류, 규정 및 연구개발비 계상 관련 안내	
		담당자	연락처/이메일
1	연합학습 플랫폼 활용 활성화 지원	정은정 팀장	02-6191-1510 jej@kpbma.or.kr
		조혜린 PM	02-6191-1511 chr@kpbma.or.kr

- 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1877-2041)

※ IRIS 콜센터 운영시간 : 09:00 ~ 18:00